

제168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7.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9호로 2012년 6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관련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은 매년 사업계획서에 의하고 예산범위에서 치과 주치의사업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원받음 (안 제6조 및 제7조)
- 마.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안 제8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치아우식증 등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며 치과주의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대상은 매년 사업계획서에 의하고 지원액은 예산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진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신청시 즉시 환수토록 하였음.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이며,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광진구, 노원구, 성동구, 강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6개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25개 자치구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5월 4일 서울시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은 관내 15개소 지역아동센터 초·중·고생 390명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총 1,584만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될 예정임.

참 고 자 료

1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서울특별시 표준안

서울특별시 00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료”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보건소장의 책무) ① 보건소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액) 서울특별시 00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

4. 보건소장

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00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

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